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정 적용대상 확대〉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63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 (1) 제 출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 (2) 제 출 일 : 2024. 7. 26.
- (3) 회 부 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 반면 해당 회사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기준이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어,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해 동법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및 제13조제11항제1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규정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 ④ (생략)	제2조(정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⑤ -----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⑥ ~ ⑰ (생략)	⑥ ~ ⑰ (현행과 같음)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⑩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⑪ ----- ----- ----- ----- ----- -----

○ 현행 제2조제5항1)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²⁾로 보도록 하고, 제조 등을 위탁받은 경우 수급사업자³⁾로 보지 않도록 함. 또한 현행 제13조제11항제1호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중견기업⁴⁾에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라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규정⁵⁾을 적용받도록 함.

-
- 1) 제2조(정의)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 2)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 3)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5)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⁶⁾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8월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2024년 5월 14일을 기준으로 공시대상기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88개(계열회사 3,318개)이며, 이 중 48개 기업집단(계열회사 2,213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음.

< 기업집단 현황 >

구 분	집 단 명	국내 계열회사수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48개)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화, HD현대, 지에스, 신세계, 씨제이, 한진, 카카오, 엘에스, 두산, DL, 셀트리온, 중흥건설, 미래에셋, 네이버, 현대백화점, 부영, 금호아시아나, 하림, SM, 에이치디씨, 영풍, 효성, 호반건설, DB, 케이씨씨, 장금상선,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오씨아이, 태영, 넥슨, 세아, 엘엑스, 넷마블, 에코프로, 이랜드,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이치엠엠, 에스-오일, 쿠팡, 케이티앤지	2,213개
기타 공시 집단(40개)	한국엔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 태광, 금호석유화학, 다우키움, 삼천리, 동원, KG, HL, 아모레퍼시픽, 대방건설, 애경, 엠디엠, 크래프톤, 삼양, 보성, 동국제강,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글로벌세아, 아이에스지주, 유진, 영원, DN, 고려에이치씨, 오케이금융그룹, BGF, 대신증권, 하이트진로, 농심, 신영, 한솔, 반도홀딩스, 삼표,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두나무, 한국지엠, 한국항공우주산업	1,105개
계 (88개 집단)		3,318개

* 제주전환집단(43개)은 음영 표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열등한 지위에 놓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 각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도 보호대상 수급사업자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법률 체계상 개정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9